

교구운영규정

제정 1992. 11. 08
 개정 1994. 4. 17
 개정 1996. 6. 9
 개정 1999. 7. 4
 개정 2008. 11. 30
 개정 2010. 6. 20
 개정 2012. 1. 29
 개정 2020. 4. 26
 개정 2021. 11. 28
 개정 2023. 8. 20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여의도순복음교회(이하 본 교회라 한다)교구의 운영에 관한 절차를 정하여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통한 본 교회 부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교구 및 대교구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본 교회 정관 및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 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과 같다.

1. “교구협의회”라 함은 교구 단위의 제반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회를 말한다.
2. “대교구협의회”라 함은 대교구 발전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대교구 단위의 협의회를 말한다.
3. “지구장”이라 함은 대교구 운영에 관한 지원 및 협의를 위하여 교구운영분과위원회에서 복수로 추천한 자 중에서 당회장이 임명한 장로를 말한다.
4. “간사장로”라 함은 대교구의 실무운영을 위하여 대교구 장로 중에서 지구장의 추천으로 교구운영분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회장이 임명한 장로를 말한다.
5. 삭제
6. “교구협의회 의장”이라 함은 교구운영에 관한 지원 및 협의를 위하여 지구장의 추천으로 교구운영분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회장이 임명한 장로를 말한다.

제4조 (실무행정 소속부서와 소관분과위원회) 이 규정의 운영관리에 관한 실무행정 소속부서는 교무국(담당부서)으로 하고, 소관 분과위원회는 교구운영분과위원회(이하 본 위원회로 한다)로 한다.

제2장 운영위원회

제5조 (운영위원회 설치) 본 위원회 내에 최고의결 및 정책결정 기관으로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6조 (운영위원회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관장한다.

1. 교구 및 대교구, 지식할 협의회 운영에 관한 제반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2. 교구 및 대교구, 지식할 협의회에서 발생한 제반사항 처리에 관한 사항
3. 상벌에 관한사항

제7조 (교구운영위원회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의장 1인과 당회장이 임명한 약간명의 위원과 간사 1인으로 구성한다.

② 본 위원회 위원장이 당연직 의장이 되고, 교무담당부목사, 교무국장, 장로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3장 대교구협의회

제8조 (대교구<지성전·직할성전> 협의회 설치) ① 각 교구협의회 건의사항을 심의의결하고 대교구 발전을 위한 제반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대교구협의회를 둔다.

② 대교구(지성전·직할성전)협의회는 대교구장(지성전·직할성전은 담임목사)과 지구장을 공동의장으로 하고, 감사 1인, 간사 1인, 서기 1인, 회계 1인과 교구협의회 의장 및 대교구 소속 전 장로를 위원으로 하여 구성한다. 다만, 지성전과 직할성전은 성전 내 기관(자율기관 포함)의 전 교역자와 기관장을 위원으로 포함한다.

제8조의2(지구장 및 간사장로의 임기) 지구장 및 간사장로의 임기는 한 지역에서 1년으로 하고 1년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대교구협의회 기능) 대교구협의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관장한다.

1. 대교구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2. 대교구내 각종 예배 계획 및 실행에 관한 사항
3. 교구협의회 건의사항 처리 및 실행에 관한 사항
4. 제직(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 추천에 관한 사항
5. 구역장, 지역장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6. 상벌에 관한 사항
7. 국민일보 보급 확장에 관한 사항
8. 대교구내에 발생한 제반 문제점 협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 (회의 및 보고) 대교구협의회 회의와 보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교구협의회는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2. 간사는 의장의 명에 따라 회의 일시, 장소, 심의안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회의 개최 5일전까지 구성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공동의장이 협의 결정권을 가진다.
4. 서기는 대교구협의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2부 작성하여 1부는 차기 협의회 개최

시 낭독 후 보관하고 1부는 간사에게 제출한다. 회계는 매월 회계 결산을 결재를 득하여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간사는 공동의장을 도와 원만한 협의회가 되도록 보좌하며, 보고의 책임을 진다.

5. 각종 행사, 회비 등 기금일체의 통장관리는 하나의 계좌로 통일한다. 대교구협의회 및 지·직할성전 관련서류(장부, 통장, 영수증, 제결재서류)등은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연1회 본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교구협의회

제11조 (교구협의회 설치) 교구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구협의회를 둔다.

제12조 (기능) ① 교구협의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의결한다.

1. 교구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2. 교구 내 각종 예배 계획 및 실행에 관한 사항
3. 질병이나 고난 받는 성도의 심방과 지원에 관한 사항
4. 구역내실화 및 구역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교구 내 전도와 심방에 관한 사항
6. 제직(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 추천에 관한 사항
7. 구역장, 지역장 선임 및 해임의 추천에 관한 사항
8. 상벌의 추천에 관한 사항
9. 경조사 및 성도 간 친교활동 등 각종행사에 관한 사항
10. 국민일보 보급 확장에 관한 사항
11.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교구협의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관리 및 결정·집행한다.

1. 교구운영비, 기도처운영비, 기타 후원금(개인회비 포함) 관리는 교구협의회 의장 명의로 금융계좌(예금자 보호법의 대상이 되는 금융상품 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개설하여 교구임원(회계)이 관리한다.
다만, 교구협의회 의장 명의로 금융계좌를 개설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교구협의회 의장이 지정한 교구임원(협동총무 또는 회계)의 금융계좌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서식에 지구장을 경유, 교구운영분과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교구협의회 금융계좌 통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
2. 교구의 재정 운영과 집행은 교구 임원과 협의하여 교구협의회 의장이 결정, 집행하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3조 (구성 및 임무) ① 교구협의회는 공동의장 2인, 감사 1인, 총무 1인, 협동총무 1인, 서기 1인, 회계1인을 포함한 교구내의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지역장으로 구성하되 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구역장을 회원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 ② 교구협의회 공동의장은 소교구장과 교구 내 거주 장로 중에서 지구장의 추천을 받아 본 위원회의 의결로 당회장이 임명하고, 교구협의회 의장이 교구협의회의 사무를 관장한다. 교구협의회 의장 장로의 임기는 한 지역에서 1년으로 하고 1년 연임할 수 있으며 교구 내 장로로 순환 임명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

- 하는 경우 타교구의 장로를 임명 파송할 수 있다.
- ③ 총무는 안수집사 중에서 교구협의회 의장의 추천으로 교구협의회 의결로 선임하고, 협동총무는 권사중에서 교구협의회 의장이 지명한다. 총무와 협동총무는 의장을 보좌하며 교구협의회 사무를 관장한다.
 - ④ 감사는 장로중에서 교구협의회 의장이 지명한다. 서기는 지역장 중에서 교구협의회 의장이 지명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기록한다.
 - ⑤ 회계는 구성원 중에서 교구협의회 의장이 지명하고 협의회의 회계를 담당한다.
 - ⑥ 교구협의회 의결에 의하여 원로장로 및 70세 이상의 안수집사 및 권사 중에서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자문위원은 협의회를 지원하고 자문하되 의결권은 가지지 아니한다.
 - ⑦ 지구역장 및 임원의 정년은 70세로 한다.
단, 본 위원회 의결을 거쳐 예외를 둘 수 있다.

제14조 (회의소집) ① 교구협의회는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의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 ② 총무는 제 1항의 경우 의장의 명을 받아 회의 개최일시, 장소, 심의안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구성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 (회의)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이 곤란한 경우에는 의장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16조 (보고) ① 교구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교구협의회 개최결과에 관한 사항
2. 교구협의회 운영실적에 관한 사항 및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3. 기타 교구협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기타 본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5. 각종 행사, 회비, 국민일보문서선교 등 기금 일체의 통장 관리는 하나의 계좌로 통일한다. 교구협의회 및 기도처 관련 서류(장부, 통장, 영수증, 제 결재서류) 등은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연1회 본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 ① 이 규정의 변경은 당회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당회장의 결재를 받은 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 ② 이 규정은 2020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③ 이 규정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 된 것으로 본다.
- ④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위법에 따른다.

부 칙(2021. 11.28)

- ① 이 규정은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08.20)
이 규정은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사용 승인 신청서 (교구운영규정 제12조제2항 관련)

1. 신청 기관

성 전 대교구	교구
------------	----

2. 사용할 금융회사 계좌

은행	명의자	계좌번호

3. 계좌 명의자와 교구와의 관계

4. 신청 사유

-

위 내용에 의하여 년도에 사용할 교구협의회 계좌로 사용하고자 신청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사용할 통장 표제부 사본

20 년 월 일

성전 담임목사	(서명)	
대교구장	(서명) 지구장	(서명)
교구장	(서명) 협의회의장	(서명)

===== (날인) ===== 질취선 =====

사용 승인장

승인번호 호

신청기관	성전 대교구	교구 , 협의회의장	장로
------	-----------	------------	----

승인계좌	은행, 명의자:	, 계좌번호:
계좌 사용 승인 유효기간 : 승인 신청한 교구협의회의장 임기 까지		

위 신청 내용에 따라 년도에 사용할 계좌를 교구운영규정 제12조제2항에 의하여 승인합니다. 주) 사용 승인장은 통장 표제부에 반드시 첨부 요망

20 년 월 일

교구운영분과위원장

장로 (인)